

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는 ‘수상활성화 종합계획’을 발표하며, 바라보는 한강을 넘어 느끼고, 경험하는 한강을 만들어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‘리버시티 서울’을 조성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. 앞으로 한강에서의 다양한 수상활동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의 중요성 또한 높아졌습니다.

□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자의 의무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시설과 운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

안 제4조제1항과 안 제6조제1항에서 상위법 근거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,

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수상레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안 제9조를 신설하여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